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2277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이준섭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호현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9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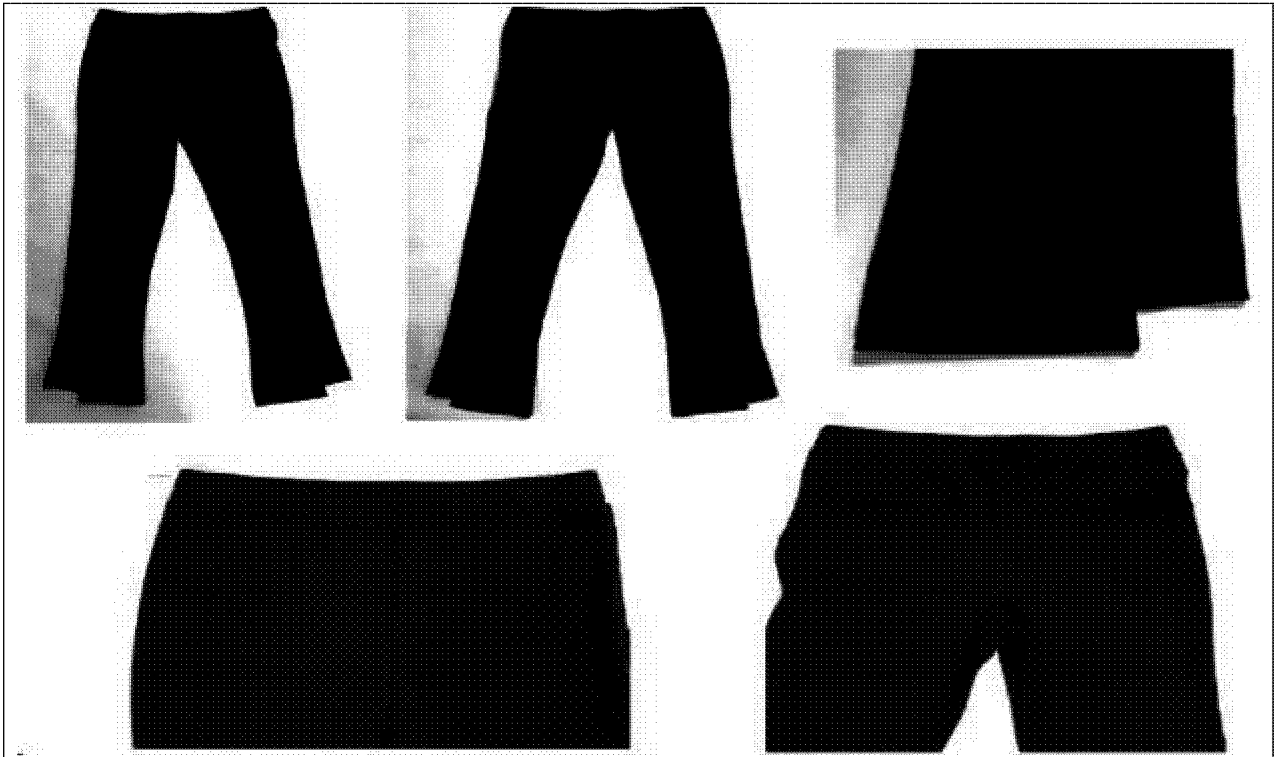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구두 및 장신구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인터넷의류쇼핑몰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2015. 11.경 원고에 입사하여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9. 10.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바지 제작 및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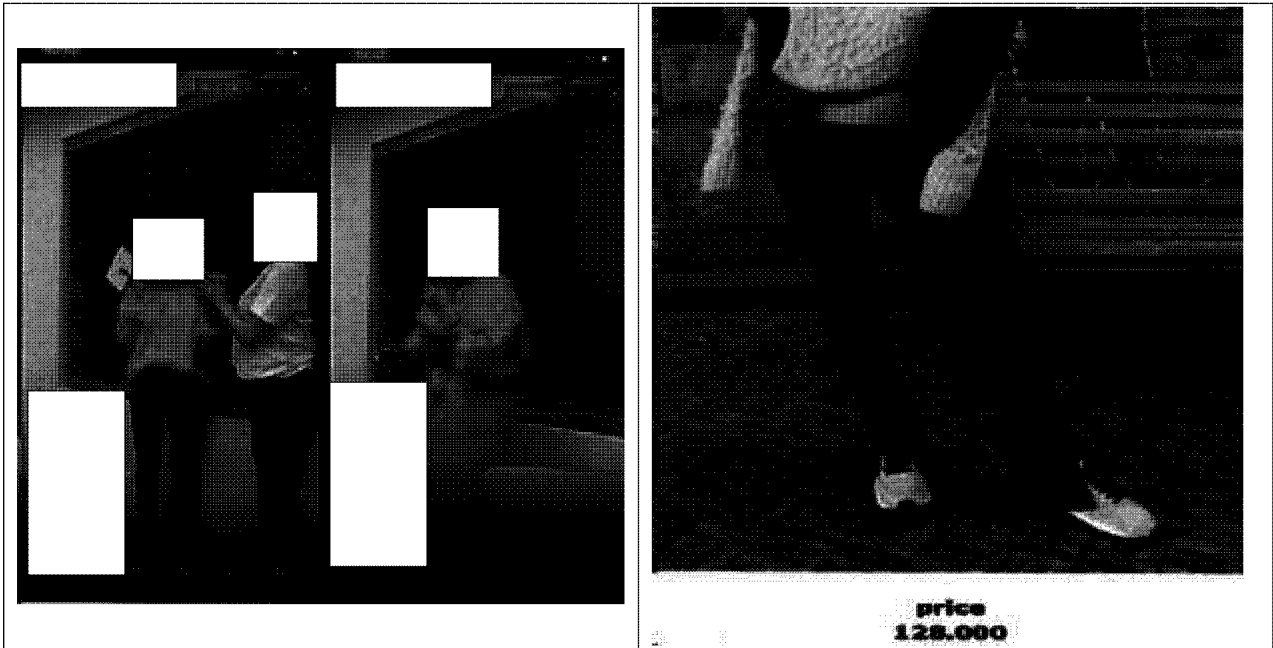
원고는 2019. 4.경 다음과 같은 바지(이하 '이 사건 원고 바지'라 한다)를 제작하였고, 2019. 8.경 'E'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의 바지 제작 및 판매

피고들은 2019. 11.경 인터넷쇼핑몰(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다음과 같이 바지(이하 '이 사건 피고 바지'라 한다)를 광고·판매하였다(왼쪽 사진에서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피고 B이고,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피고 C이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라. 원고는 2020. 2.경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2020. 12. 15.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 18,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인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것은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1)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원고 바지의 생산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위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것은 업무상배임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1)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원고가 선행상품인 F 브랜드의 바지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일 뿐 별다른 투자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고 창작성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같은 호 (파)목에서 보호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이 사건 피고 바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제조·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같은 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원고 바지 생산에 관한 자료는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제조·판매한 것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되었다. 신구법 사이의 내용이 동일함바, 이하에서는 편의상 현행법률에 따라 표시한다.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모방'이라고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보호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관하여 창작성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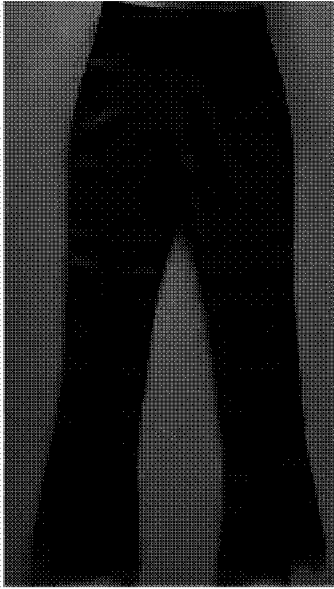




의 형태가 종래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 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형태적 특징으로 주장하는 요소, 즉 ① 슬릿의 위치가 정면에서 바깥으로 치우쳐 있고, 안쪽 슬릿 아랫 부분의 각도가 직각에 가까우며, 안쪽 슬릿이 바깥쪽 슬릿보다 긴 점, ② 허리에서 슬릿까지 내려오는 세로선의 안쪽 옷감이 바깥쪽 옷감을 덮고 있고, 세로선의 슬릿부분까지 스티치가 두 줄로 이어지는데, 슬릿 아랫단에는 스티치가 없는 점, ③ 바지의 앞면이 뒷면보다 긴 점, ④ 바지 앞면에 지퍼처럼 보이게 한 장식 요소 및 바지 뒷면에 주머니처럼 마감한 장식 요소가 있는 점 등을 갖춘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자)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F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였기 때문에 위 (자)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2, 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국적 의류기업인 F에서 2019. 1.경 아래와 같은 형태의 바지(이하 '이 사건 F 바지'라 한다)를 출시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F 바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디자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전체적 형상	슬릿의 형태	허리부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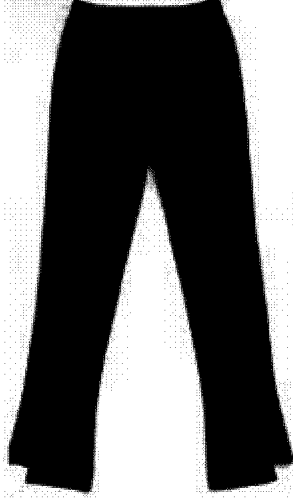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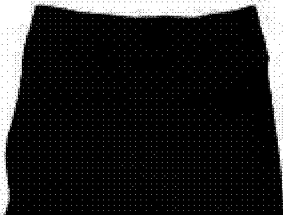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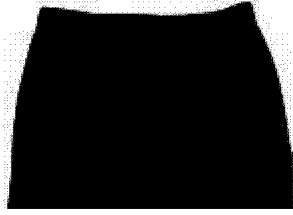


그러나,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이 사건 F 바지 사이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차이점 및 원고의 일반적인 제품 생산 과정(갑 제2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원고 바지가 이 사건 F 바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자)목 부정 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논거로 원용하고 있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을 제4호증)는 (자)목 부정 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품 형태	이 사건 F 바지	이 사건 원고 바지
전체적 형상	몸에 붙는 레깅스	몸에 붙지 않는 바지 형태
슬릿 아래 부분의 각도	약 60도	직각에 가까움
슬릿 아랫단의 스티치	유	무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	무	유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	무	유



2)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이 사건 피고 바지의 대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이 사건 피고 바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요소가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고, 바지 길이, 허리라인의 굴곡, 소재 등 일부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점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항목	내용	이 사건 원고 바지	이 사건 피고 바지
전체 형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 전체 길이의 약 1/8 정도의 밑단에 정면으로 향해 갈라지는 절개선이 있음 ○ 절개선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양 쪽 옷감의 길이가 다름 ○ 절개선을 따라 허리 부분까지 바느질이 보이도록 박음질이 있음 ○ 절개선이 바지 옆선 봉제선을 따라 길게 들어가 있음 		
슬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개선을 기준으로 안쪽 옷감의 길이가 더 김 ○ 절개선을 기준으로 양 쪽 옷감의 맨 아래 부분 단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음 		
정면 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에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을 채택하였음 ○ 바지의 지퍼 부분에 지퍼는 없고, 박음질만 있음 		
뒷면 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엉덩이 양 쪽 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3) 의거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원고 바지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던 점, ② 피고 C은 원고에서 퇴사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피고 바지를 광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바지는 이 사건 원고 바지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²⁾

4.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540장 이상 판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판매하여 얻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83,691원(= 판매가 235,000원 - 회계원가 51,309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99,193,140원(= 540

2) 아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용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나 일반불법행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장 × 183,691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아울렛에서 82,250원에 할인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원고 바지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3,691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이 판매한 이 사건 피고 바지의 판매수량 540장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들도 위 판매수량에 다툼이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바지를 최초 정상가에 판매하기도 하고, 할인가에 판매하기도 하였다. 최초 정상가 235,000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원가를 적용하면 앞서 계산한 것처럼 손해액이 99,193,140원이 되고, 갑 제16호증에 나타나는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할인판매가 82,250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16,708,140원[= 540장 × 30,941원(= 82,250원 - 51,309원)]이 된다.

③ 피고들의 판매량에는 피고 B의 명성 및 신뢰도, 판매기법 등도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피고들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광

 판사 최형준

 판사 윤성현